



## 인도네시아 정부,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4 와 일치시키기위한 상호 합의 절차에 관한 지침 수정안 발표

인도네시아 재경부 (MoF)는 최근 "상호 합의 절차 이행 지침" ("PMK-49")과 관련하여 규정 No. 49 / PMK.03 / 2019 를 발행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OECD 의 BEPS 14 조("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 된 인도네시아의 상호 합의 절차 (MAP) 체계의 업데이트 된 버전이다.<sup>1</sup>

2019 년 4 월 26 일부터, PMK-49 는 이전 MAP 규정 인 재경부규정 No. 240 / PMK.03 / 2014 (2015 년 최종 BEPS 보고서 이전에 발행됨)<sup>2</sup>을 대체하게 된다.

MAP 체계는 OECD 모델 조세 조약 제 25 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조세 조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조세 조약의 MAP 조항에 의하면, 각국이 상호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조세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MAP 프로세스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Action 14 는 "최소 기준"및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포괄적 이행체제<sup>3</sup>의 구성원은, 이러한 최소 기준의 채택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 인 동료 검토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대상이 된다. G20 의 참여국가이자, 포괄적 이행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인도네시아는 Action 14 의 최소 기준을 이행, 준수하고 동료 평가를 통해 검토 및 모니터링 받을 것을 약속했다.

<sup>1</sup> OECD (2015), *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Action 14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633-en>

<sup>2</sup> Deloitte Indonesia Tax Alert, [January 2015 Edition](#) 참고

<sup>3</sup> OECD/G20 의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포괄적이행체제는 125 개이상의 국가가 BEPS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체계이다.

PMK-49 에 나타난 인도네시아의 입장과 Action 14 의 권고 사항은 대체로 일치하며, PMK-49 는 2019 년 국세청 (DGT) 핵심 개혁 과제 의 한 부분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응용 프로그램의 절차, 일정 및 후속 조치 측면에서, MAP 과정에서 더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Tax Alert 는 수정된 MAP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 인도네시아 신청자가<sup>4</sup> MAP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식 요건

PMK-49 는 인도네시아 신청자가 MAP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공식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 새로 도입된 요구 사항 /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우선하는 조세 조약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MAP 신청서 제출 기한은 3 년이다. 기준시점은 세액확정 통지서(고지서), 납부증빙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일자 또는 조세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세무 처리일로부터 기산한다;<sup>5</sup>
- b) 규정된 MAP 신청서 양식과 추가적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sup>6</sup> 이러한 증빙은 타방채약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 증명서,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세무상 처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이러한 증빙을 기일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등이다.<sup>7</sup>;
- c) MAP 신청서는 직접 제출되거나, 우편 또는 특송회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타의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sup>8</sup>

또한, MAP 신청과 관련된 행정 요구 사항이 규정된다.

#### 후속 조치 및 전반적인 MAP 프로세스에 대해 지정된 일정

PMK-49 는 MAP 신청과 관련하여 DGT 및 납세자가 취할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한다.

- a) DGT 는 인도네시아 신청자 또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무 당국이<sup>9</sup> 제출 한 MAP 신청서의 요건 및 적정성을 서면 검토하여, MAP 신청서 수신일로부터 최대 1 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절하는 서면 결정서를 발급한다.<sup>10</sup> 기간을 넘기는 경우, MAP 신청서는 협상을 위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sup>11</sup>;
- b) DGT 에 의한 서면 승인서 발급일 이후 최대 2 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신청자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무 당국이 조세 조약의 규정에 모순되는 과세처분<sup>12,13</sup>을 하였다는 자료와 증빙을 하드 카피 및 전자 양식 2 가지로 모두 제출한다;

<sup>4</sup> MAP 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국민

<sup>5</sup> PMK-49, Article 3 (1)(c)

<sup>6</sup> PMK-49, Attachment A.1, A.2, A.3.

<sup>7</sup> PMK-49, Article 3 (1)(e)

<sup>8</sup> PMK-49, Article 3 (4)

<sup>9</sup> 이중과세방지협약, Article 1 (6) of PMK-49 (*i.e.* Competent Authority)에 따라, MAP 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 또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무당국

<sup>10</sup> PMK-49, Article 4 (2), (3)

<sup>11</sup> PMK-49, Article 4 (4)

<sup>12</sup> PMK-49, Article 3 (1) (e) (2)

<sup>13</sup> PMK-49, Article 6 (1) (a) (1)

- c) 신청된 MAP 가 1 개월 이내에 DGT 로부터 서면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해 자동적으로 승인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MAP 신청 승인 기한이 초과 된 날로부터 최대 2 개월 내에 필요한 모든 정보<sup>14</sup>를 제출해야한다. <sup>15</sup> 인도네시아 신청자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DGT 에 의해 협상이 중단 될 수 있다.
- d) DGT 가 MAP 요청을 개시한 후 최대 8 개월 이내에 조약 협약 상대국의 MAP 절차의 수락에 관한 서면 진술서가 없으면, DGT 는 MAP 를 취소한다. <sup>16</sup>그러나 인도네시아 신청자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sup>17</sup>;
- e)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서면 MAP 신청서를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수령 / 제출일로부터, 24 개월 내에(기존 MAP 규정은 3 년) 협상을 종결한다. <sup>18</sup> 기존 MAP 규정<sup>19</sup>과 달리 PMK-49 는 기한의 연장이 불가하며 24 개월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합의가 "불합치"로 결론날 것이라고 명시한다<sup>20</sup>;
- f) 일단 협상이 끝나면, DGT 는 조세조약 상대국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및 수령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sup>21</sup>

### MAP 신청의 취소

이전 MAP 규정과 마찬가지로 PMK-49 에는 MAP 신청 취소에 대한 특정 조항 및 규정된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sup>22</sup> 그러나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은 인도네시아 신청자의 MAP 신청 취소는 회의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초 6 개월 내에 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DGT 는 취소 요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취소 요청의 승인 또는 거절을 확인하는 서면 승인서를 발급해야한다.

### 국내 불복 절차와의 관계

PMK-49 는 납세자가 국내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MAP 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사유가 국내 불복절차의 쟁점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sup>23</sup>

또한 PMK-49 는 MAP 협상의 종료이전에 조세법원의 판결이 먼저 선고되는 경우 MAP 절차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sup>24</sup>

그러나 조세법원의 판결 전에 상호 합의가 체결된 경우, 납세자는 불복절차를 철회해야 하며 불복 철회에 대한 조세법원의 서면 승인을 받으면 DGT 는 수정된 이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sup>25</sup>

<sup>14</sup> PMK-49, Article 3 (1) (e) (2)

<sup>15</sup> PMK-49, Article 6 (1) (a) (2)

<sup>16</sup> PMK-49, Article 4 (6)

<sup>17</sup> PMK-49, Article 4 (7)

<sup>18</sup> PMK-49, Article 5 (1)

<sup>19</sup> PMK-240, Article 25 (6)

<sup>20</sup> PMK-49, Article 5 (5) (b)

<sup>21</sup> PMK-49, Article 5 (6)

<sup>22</sup> PMK-49, Article 8

<sup>23</sup> PMK-49, Article 2 (7)

<sup>24</sup> PMK-49, Article 5 (5) (c)

<sup>25</sup> PMK-49, Article 9 (6); Tax Court Law, Law No. 14 of 2012, Article 39 (2)와 일치

## 협상 결과 : 동의 또는 불일치

상호 합의는 협상 결과가 합의인지 불일치인지를 명시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sup>26</sup>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상이 끝나기 전에 조세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협상이 MAP의 당사자인 두 세무 당국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명백한 상황 외에, 아래의 상황은 불일치로 결론 날 수 있다:<sup>27</sup>

- a) 협상이 24 개월의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함;
- b) MAP에서 논의되는 과세 연도 / 기간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기법상 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한 경우 협상은 불일치 한 것으로 결정;
- c) 국내 납세자가 MAP에서 논의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조세사면제도에 참여한 경우.

## 발효일 및 진행중인 MAP 절차에 대한 적용여부

PMK-49는 발행일 즉 2019년 4월 26일부터 발효되며 이전 MAP 규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MAP 사례는 PMK-49에 따라 처리 된다.<sup>28</sup>

## 사전가격 승인(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MAP 연관 통계를 제공하는 웹 포털

PMK-49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DGT는 Action 14에 제시된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APA 및 MAP 체계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웹 포털](#)을 개설했다. 이 웹 포털은 인도네시아의 APA 및 MAP의 신청,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이 웹 포털은 APA 및 MAP 통계가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공식 웹 사이트이다.

## 우리의 의견

PMK-49를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DGT가 인도네시아 MAP 체계를 Action 14의 권장 사항 및 기타 국제 권장 사항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이중 과세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며 현시점에 맞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논평으로써, 강화된 MAP 체계는 다국적 그룹으로 하여금 국내 불복 절차와 더불어,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 할 때, 더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sup>26</sup> PMK-49, Article 5 (4)

<sup>27</sup> PMK-49, Article 5 (5)

<sup>28</sup> PMK-49, Article 10

#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                            |   |                          |
|----------------------------|---|--------------------------|
| <b>Melisa Himawan</b>      |   |                          |
| Tax Managing Partner       |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 mehimawan@deloitte.com   |
| <b>Ali Mardi Djohardi</b>  | Business Tax  | alimardi@deloitte.com    |
| <b>Balim</b>               | Transfer Pricing  | bbalim@deloitte.com      |
| <b>Cindy Sukiman</b>       | Business Tax  | csukiman@deloitte.com    |
| <b>Dionisius Damijanto</b> | Business Tax  | ddamijanto@deloitte.com  |
| <b>Heru Supriyanto</b>     | Business Tax  | hsupriyanto@deloitte.com |
| <b>Irene Atmawijaya</b>    |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 iatmawijaya@deloitte.com |
| <b>John Lauwrenz</b>       | Business Tax  | jlauwrenz@deloitte.com   |
| <b>Roy David Kiantiong</b> | Transfer Pricing  | rkiantiong@deloitte.com  |
| <b>Roy Sidharta Tedja</b>  |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 roytedja@deloitte.com    |
| <b>Turmanto</b>            | Business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 tturmanto@deloitte.com   |
| <b>Yan Hardyana</b>        | Business Tax  | yhardyana@deloitte.com   |

##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sup>nd</sup>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affili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provide services in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East Timor,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Guam, Indonesia, Japan, Laos, Malaysia, Mongolia, Myanmar, New Zealand, Palau, Papua New Guinea, Singapore, Thailand, The Marshall Islands,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 Hong Kong SAR and Macau SA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each of these, operations are conduct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 2019 Deloitte Touche Solutions